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안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

-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청년 한 명당 임금을 연 900만원 한도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청년 한 명당 임금을 연 900만원(월 75만원) 한도로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2018.5.21.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상 업종 및 규모,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소규모 기업은 1~2명의 청년만 추가고용 하여도 지원이 가능. * 2019년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19. 8. 20부터 다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연평균 (2019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2018년도 고용보험 신규 성립의 경우에는 성립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 어 산출, 소수점 이하 버림(예시: 연평균 8.6명 → 8명으로 인정)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다만, 2018년 연평균 (2019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장유망업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①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④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⑤ 지원 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 등

<사업주 요건>

-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함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2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
100인 이상	3명 이상 (3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

* 2019년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 :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1~4명인 경우 : **최대 3명** / 5~9명인 경우 : **최대 6명 지원**

지원 요건

<기업 규모(기준 피보험자수) 판단 기준>

1) 기존 기업

- '18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모 판단하되, '18년중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18년말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모 판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버림(예시: 연평균 8.6명 → 8명으로 인정)

2) '19년 신규성립 기업

- '19년중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기업규모 판단

·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① 기업이 “규모별 최저고용요건 인원”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② 매월 단위로 기업 전체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여부 판단

• **지원기간 시작이후에는 전체 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함**

- 전체 피보험자수는 '기준 피보험자수*'와 '청년 신규채용인원'을 합한 수로 하고, 각 장려금 지급구간마다 유지해야 함

* 20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등

- 전체 피보험자수 유지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이후 매 1개월 단위 구간의 월말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신규채용 청년 요건>

- '19.1.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18년에 기간제 등으로 채용 후, '19년중 정규직으로 전환(3개월 이내) 한 경우에도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신규 채용된 청년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1,745,150원(주40시간 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어야 함

•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①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④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⑤월 임금이 75만원 미만인 근로자 ⑥정규직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⑦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⑧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변경 전 : 최대 90명까지 지원)

•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함

***지원 예시**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인~99인	×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100인 이상	×	×	2,700만원	3,600만원	...

①매월 단위로 "지원인원 × 75만 원"을 지원함

②다만, 지원 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 '80만 원 이상 1,745,15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인원 × 지급임금 × 1/3"을 지원함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채용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결근 등 사정으로 근로일 수가 적어 해당 월에 지급받은 임금이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액(7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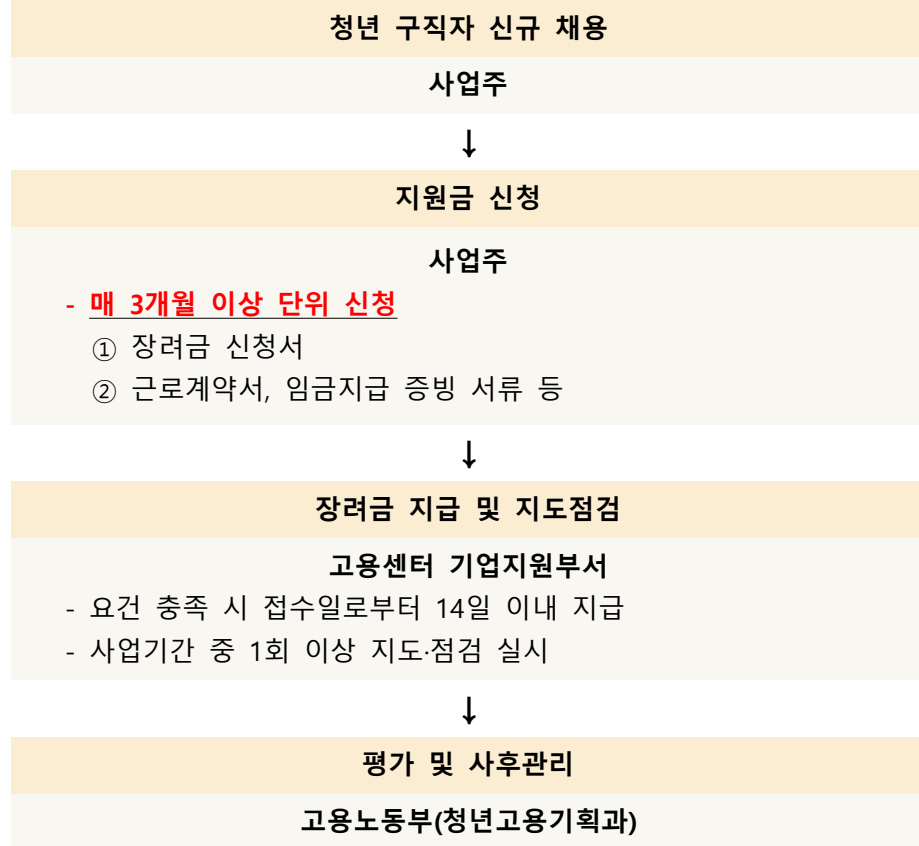
지급주기 및 기간

- 기업을 기준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함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3개월 이상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함**

• 장려금 지급 시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채용 등 확인을 통해 판단하고, 요건 충족 '월'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요건 미충족 '월'에 대해서는 장려금 "부지급"

구비서류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사업 추진체계


<끝.>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별첨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2019 최초 채용 사업장용)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 표시를 합니다.

1.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국가등 재정자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직전 보험연도(2018년) 연평균 기준 ('19년도 신규사업장의 경우 성립월의 말일 기준) 등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장려금 지원요건 최초 총족일 (최초 신청시만 기재)	
	구분	월	월	월	년 월 일	
	해당 월말 전체 피보험자수					
신청인원 (지원대상 청년수)						

3. 신청 내용: 신청대상 근로자에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이내의 혈족인척 포함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현황 () 명					
연번	해당연월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전환)일 (년 월 일)	월 임금총액(원) (세전기준)	
1					
2					
3					
4					
5					
장려금 신청인원 () 명, 신청금액 ()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

첨부서류	1. 월별임금대장 2. 임금지급증빙서류 3. 근로계약서 4. 통장사본 5. 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서류
------	--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전결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